컨 테 이 너 손 상(Damage) 확 인 서

컨테이너 번호	
반 납 일 자	
반 납 장 소	
화 주 명	
내 품 명	
운 송 사 명	

상기 컨테이너 손상(Damage)과 관련하여, 하기 회사가 컨테이너 손상 및 수리비에 대한 책임 및 지불을 확약하는 바 입니다.

- 당사 선하증권 약관 14조·15조·16조에 의거 컨테이너 손상(Damage)에 따른 책임을 가집니다.
- Consignee(수하인,구매자)가 B/L(선하증권)을 인도받는 시점에서 Shipper(송하인)의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컨테이너 관리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도 함께 이전됩니다. 즉, Shipper (송하인)의 잘못으로 인한 컨테이너 손상의 경우에도 법률상 Consignee(수하인)의 공동책임 으로, 해당 손상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단, 하기 내용에 의한 Damage로 확인될 경우, 본 확인서 무효와 함께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점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적지에서 공 컨테이너 수취시부터 손상
- 터미널 및 선박의 양/적하 작업 부주위에 의한 손상

○ 컨테이너 손상(Damage) 비용 책임자

회 사 명	
담당자(성함/직위)	
회사연락처	
E-mail 주소	
회사직인	

○ 손상확인서 제출처

- 컨테이너 검사장

SM LINE CORPORATION